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29
----------	------

제출연월일 : 2016년 5월 30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안이유

혁신학교는 자율학교로 지정·운영되고 있어 현재 혁신학교의 지정·운영 기간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자율학교 지정·운영 기간과 일치시켜 혁신학교 운영 지원의 효율성을 기하고, 혁신학교의 지정·운영 기간 개정에 따라 혁신학교의 종합평가 시기도 이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혁신학교의 지정·운영 기간을 “4년”에서 “3년 이상 5년 이하”로 개정(안 제3조 제2항)
- 나. 혁신학교의 종합평가 시기를 혁신학교의 지정·운영 기간 개정에 맞추어 “지정 후 4년차”에서 “운영 마지막 해”로 개정(안 제4조 제1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별첨 5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 제4항(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 제4항(평가)
 -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지정기간 연장)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별첨 2**)

다. 협의 : 감사관, 정책·안전기획관, 예산담당관

라.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1**

○ 입법예고(2016. 4. 6. ~ 4. 27.) 결과 : 제출 의견 없음

○ 규제심사 : 해당 없음

○ 부패영향평가 :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별첨 3**

○ 성별영향분석평가 :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함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별첨 4**)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혁신학교의 운영 기간은 4년으로 하고”를 “혁신학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에서 지정·운영하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지정 후 4년차”를 “운영 마지막 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혁신학교의 지정 및 운영) ① (생략)</p> <p>② <u>혁신학교의 운영 기간은 4년으로 하고,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u></p> <p>③ ~ ④ (생략)</p>	<p>제3조(혁신학교의 지정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u>혁신학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에서 지정·운영하며,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u></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4조(평가, 재지정 및 지정의 취소)</p> <p>① 혁신학교는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며, 교육감은 <u>지정 후 4년차에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u></p> <p>② ~ ④ (생략)</p>	<p>제4조(평가, 재지정 및 지정의 취소)</p> <p>① 혁신학교는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며, 교육감은 <u>운영 마지막 해에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u></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별첨 2】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지정·운영 기간 및 종합평가 시기 조정 및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 삭제와 관련하여 비용추계 해당 없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혁신과 장학사 박미숙 (02-3999-434)

【별첨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	감사관	행정6급	우성경
입안주관부서	교육혁신과	통보일	2016.4.15.
관련조문	평가결과		조치사항
제3조, 제4조, 제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혁신학교 지정·운영 기간 및 종합평가 시기 개정, 중복 운영되는 혁신학교 정책자문위원회의 역할을 삭제 ·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u>“원안동의”</u> 함 		<u>“원안동의”</u>

【별첨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6A서울교육006		
정책명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교육혁신과	
	담당자명	박미숙	전화번호 02-399-9343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6년 4월 7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교육혁신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조례는 혁신학교와 자율학교 지정·운영 기간을 일치시켜 혁신학교 운영 지원의 효율성을 기하고자함 ○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하여 개선 사항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p>「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음</p> <p>○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해당 없음</p>		
<p>「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6년 04월 08일</p> <p style="text-align: center;">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p> <p style="text-align: center;">(담당자/연락번호 : 박수정/02-3999-307)</p> <p>교육혁신과장 귀하</p>			

관계법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6.3.28.]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3.25., 타법개정]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 ① ~ ③ (생략)
- ④ 자율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운영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장 운영할 수 있다.
- ⑤ ~ ⑥ (생략)

■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시행 2014.2.25] [교육부훈령 제35호, 2014.2.25, 일부개정]

제8조 (평가) ① 자율학교는 자체평가와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 위원 회」 평가(이하 “위원회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 ③ (생략)
- ④ 위원회 평가는 자율학교 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전까지 실시
하여야 한다. 위원회 평가는 학교 자체평가결과를 참조하여, 서면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여야 하며. 자율학교 가
운데 학교급별로 20% 이상의 학교는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⑤ ~ ⑥ (생략)

■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5.5.22.]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905호, 2015.5.22., 일부개정]

제13조(지정기간 연장)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5년 이내로 지 정·운영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 운영할 수 있으며 매회 5년 의 범위내에서 지정 기간을 연장한다.